

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

1/2

심의일자	2018.12.11(화)		
사업명/신청위치	신도림 도시환경정비사업 / 구로구 신도림동 239번지 일대		
의결번호	2018-24-3	심의결과	조건부(보고)의결
[심의 내용] 경관 + 건축 심의			
■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,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추후 본위원회에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.			
■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「경관법」 제28조 및 「건축법」 제4조에 의한 경관·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.			
〈 건축 분야 〉			
□ 건축계획			
○ 산업단지(I1, I2)는 위원회에 제출한 대안의 배치 및 평면계획을 중심으로 개선 바람.			
- 차량출입구 및 지하주차장 통합 계획 검토 바람.			
- 각 동별 재료 및 형태 등 입면디자인 계획 개선 바람.			
- 근린생활시설 동의 지상1층은 도로변의 가로활성화를 위해 근린생활시설로 배치하기 바람.			
- 북측 10m도로, 북동측 8m 도로, 단지 내 보차혼용통로 등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보행 동선과 연계하여 산업단지 내 커뮤니티 가로활성화계획 개선 바람.			
○ 일조환경개선을 위하여 위치가 조정된 110동은 공공보행통로 상에 걸치고 있으므로 필로티로 계획 바람.			
○ 부대복리시설(커뮤니티센터, 어린이집 등)은 단순하고 무미건조한 외부형태이므로 건축물의 용도 및 사용성을 고려하여 좀 더 창의적이고, 자유로운 건축계획 개선 바람.			
○ 주동색채계획으로 단지 내 방향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, 주조색(70~80%), 보조색(20~30%), 강조색(5~10%)비율을 고려하여 색채계획 개선 바람.			
- 강조색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으며, 색의 수가 많고, 패턴이 다양하므로 조정 바람.			
- 주차장내 인지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닝별 주차장 색채계획 및 사인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바람.			
- 계속 -			

2018.12.11.
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

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

2/2

심의일자	2018.12.11(화)		
사업명/신청위치	신도림 도시환경정비사업 / 구로구 신도림동 239번지 일대		
의결번호	2018-24-3	심의결과	조건부(보고)의결
[심의 내용] 경관 + 건축 심의			
< 건축 분야 >(계속)			
<input type="checkbox"/> 건축계획(계속)			
○ 투시도는 초점거리 50mm로 작성하기 바람.			
<input type="checkbox"/> 방재			
○ 103동, 105동, 117동 우측 세대의 침실2와 104동,113동 침실3의 대피공간은 발코니 확대시 대피공간이 침실 내 설치되는 구조가 되어 대피공간으로 기능상실이 우려되고, 평상시 침실 내 방화문이 그대로 노출되어 사용 및 미관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정 바람.			
○ 102동 우측 상부세대, 침실3, 107동 우측상부 세대 침실4의 특별피난계단 계단실 창문과 거실 내 창문과의 거리를 2m이상 이격하거나, 계단실 내 창문 면적을 1㎡이하의 망입유리 불박이창으로 계획 바람.			
<input type="checkbox"/> 구조			
○ 대부분의 코어가 주동에서 상당히 돌출되어 있고, 코어의 대부분은 슬래브가 오픈되어 있으므로 코어의 횡력 저항의 부담이 다이어프램 효과로 인하여 과대평가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구조 해석 실시 바람.			
○ 주동과 지하주차장의 다양한 원인(대공간, 고층·저층 등)들로 인한 변위차와 이로 인한 결함 발생에 대한 대책 검토 바람.			
<input type="checkbox"/> 조경			
○ 지상1~2층 부대복리시설은 최대한 주동하부에 설치하여 에너지 절감을 위한 옥외 녹지공간, 식재와 이용공간 확보 계획 바람.			
○ 교목식재는 토심 1.5m이상 계획 바람.			
○ 옥상녹화계획을 최대한 확보 바람(권장). 끝.			

2018.12.11.
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